

## 성희롱 보도 태도 편파적

8월 23일 열린 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2차 공판과 관련해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조선일보의 보도 기사가 편향됐다고 항의공문을 발송하겠다고 8월 29일 밝혔다.

8월 29일 현재 공대위는 조선일보사 앞으로 보낼 공개항의문을 완성하고 사과문과 함께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있다. 공대위는 항의공문을 통해 조선일보의 23일자 성희롱 재판 기사가 신 교수 측 증인의 신문 사항만 편파적으로 보도해 성희롱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씨 우 조교의 이미지를 손상시켰기 때문에 정정보도돼야 한다고 조선일보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날 방청객 중 일부는 각 언론의 보도가 신 교수 일방의 주장만을 담아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공대위측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

서울대 재학중인 김 모군은 “재판 도중 시종일관 우 조교가 침착하게 재판을 경청하며 재판 도중에는 변호사에게 쪽지를 보내 추가 심문을 하게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다”며 “그런데도 언론이 신 교수가 비교적 침착한 모습으로 재판을 경청한

## “신 교수 주장만 담아 국민 판단 흐리게 했다”

### 공대위 조선일보사에 정정보도 및 사과문 게재 요구

또 두 가지의 사실을 잘못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그 첫째는 기사의 1단에서 ‘원고 우 씨와 근무했던 전 조교 진모 씨’라는 부분. 해당 재판일의 증인으로 출두한 진모 씨는 우 씨와 함께 근무한 조교가 아니라 89년도부터 90년초까지만 조교로 근무했으며 92년 우 조교가 재직할 당시에는 단지 학생 신분으로 실험실에 나왔던 것. 공대위는 이와같은 사실을 적시하며 “‘89년도에 조교로 근무한 적이 있었던’으로 정정보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시기에 조교로 근무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는 진 씨가 우 조교를 직접 교육시켰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또 ‘우 씨는 10여분 늦게 도착해 방청석 끝에 선 채 방청했다’고 보도한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대위는 우 씨가 10여분 늦게 재판정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재판 시작 3시보다 10분전에 변호사와 미리와 뒤좌석에 앉아서 방청하고 있었다는 것. 이렇듯 사실과 다른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반면 우 조교는 뒤에서 선 채로 재판을 지켜보았다는 식으로 왜곡 보도한 저의를 어떻게 받아들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했다.

한 학생은 신 교수가 침착하게 재판 과정을 기록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신 교수가 약간 수전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날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심하게 손을 떨고 있었고 연신 입술을 축여대는 것이 여간 불안해하는 기색이 아니었다”며 “당시 재판을 참관한 사람이라면 신 교수가 침착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을 것인데 혹시 이런 보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8월 23일 재판정에는 1심 재판과는 달리 신 교수측 방청객들이 방청석을 메꾸기도 했다. 신 교수측 방청객들은 주로 신 교수가 다니는 교회의 신도들과 신 교수 측근인 대학원생 몇 명, 가족들로 알려지고 있다. 신 교수측이 이처럼 ‘방청석 점유작전’을 펴고 있는 것은 1심 패소 이유가 사실 여부와는 관련 없이 여론재판에 밀렸다고 보고 취한 조치가 아닌가 추측되고 있다.